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6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지방세기본법」(‘13.1.1.)이 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에 일반적인 위임조례의 형식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자료제공 및 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7항 위임사항

다.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한도·신청·방법, 환수를 정함(안 제3조~제8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 위임사항

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위원회 기능, 구성, 제척·기피·회피, 위원장 직무, 위원회 운영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나. 예산조치: ‘17년도 예산 8,500천원 기확보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3. 29.~4. 1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별지 서식에 성별항목 추가함)

(6) 도내 개정완료: 거제시

(7)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 제1항제1호·제2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 제7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감면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서에 관련 증명서류 첨부
2. 체납자의 은닉 재산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서에 관련 증명서류 첨부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고등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자등이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를 신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군수는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군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

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유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는 등의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3조제2항 본문의 경우
 -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3항의 경우: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등 1건당 30만원(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본다)
2. 1인당 월 100만원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2조제4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등과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포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기간,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기간,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
2. 법 제14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 해당 지방세 징수가 완료된 후에 지급
3.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 시

③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의 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2.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대상별 포상금 지급대장

제10조(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인정
2.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 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재무과장, 경제교통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정보 제공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1. 정보 제공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전화번호:						
○ 주 소:						
2. 정보 제공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						
3. 제공 정보 내용						
※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제 보 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2호서식]

채납자 은닉 재산 신고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1. 신고자 인적사항				
<input type="radio"/> 성명:	<input type="radio"/> 생년월일:	(남/여)		
<input type="radio"/> 전화번호:				
<input type="radio"/> 주소:				
2.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				
<input type="radio"/> 성명:	<input type="radio"/> 생년월일:	(남/여)		
<input type="radio"/> 상호:	<input type="radio"/>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radio"/> 주소:				
<input type="radio"/> 사업장소재지:				
3. 은닉재산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3호서식]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구 분	건 수	금 액 (원)			포상금 (원)
		본세	가산금	계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자료 신고					
채납자 은닉재산 신고					
지난 연도 채납액 징수					
창의적인 제안, 제도 개선 등 특별한 공적					
숨 은 세 원 발 굴					
<p>「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남/여)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귀하</p>					
첨 부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이 아닌 경우 건수만 기재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 연월일	징수자		체납자				징수명세				지급일	포상금 지급액	담당 확인
	직급	성명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주소	연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별지 제5호서식]

()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제 보 자		구분	세목	납기	징수액	납세의무자				징수 월일	지급일	포상금 지급액	담당 확인
직 급 (주 소)	성명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주소				

※ 구분란에는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숨은세원 발굴 등을 표시할 것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3조제2항 본문의 경우
 -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3항의 경우: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작 성 자 재 무 과 장 신 영 수